

日帝의 韓國殖民統治

—保護政治時期(1905~1910)—

金雲泰*

《要約》

本論文은 日帝의 韓國殖民支配를 準備한 保護政治時期(1905~1910)에 있어 韓半島를 둘러싼 國際狀況下에서 韓民族의 舉기찬 抗拒運動에 直面하면서 「保護化」와 나아가서 「併合化」를 強行한 史的展開過程을 論하였다.

日帝의 韓國從屬化에는 清日戰爭, 英日同盟, 露日戰爭, Taft-桂會談등을 통한 中國, 英國, 露西亞, 美國등 列強의 黑認 또는 支持가 뒷받침 되었고 韓國內의 一進會等의 實國行為와 日本朝野의 傳統的인 對韓侵略陰謀에 의하여 强行되었다. 統監府의 「保護」統治體制는 韓國統治體制를 瓦解시켜 吸收하면서 擴大強化 되었고 初期에는 伊藤博文을 中心으로 日本軍部勢力を 牽制하면서 文官組織화를 試圖했으나 韓民族의 軍事的 文化的 抗拒運動이 組織化擴大化되었기 때문에 日本軍部勢力의 主導下에 武官統治化를 免치 못하게 되었고 專

制的 武斷統治를 指向하게 되었다.

日帝는 韓國殖民化에 있어서는丙子年不平等修好條約에 依한 經濟侵略을 土臺로 政治的支配를 制度化하는데 특히 乙巳年「保護」體制下에서 所謂顧問政治와 次官政治를 통하여 財政과 貨幣整理資本進出 土地調查收奪, 鐵產漁業의 隸屬化, 運輸通信體系의 從屬化를 強要深化시키는 同時に 政治的 隸屬化를 促進한다.

한편 日帝의 經濟侵略과 韓國支配陰謀가 露骨화되자 韓民族의 軍事的 外交的 文化的 抗拒運動과 나아가서는 民族教育運動은 民衆組織化되고 擧族的地盤에선 抗日反侵略鬪爭으로 擴大되었으나 日帝의 軍事的彈壓과 級密한 抑壓統制下에 併合陰謀가 态行됨으로써 韓國侵略이 完成되고 大韓帝國의 一時的 斷絕을 免치 못하게 된다.

準備期 「保護」政治時期(1905~1910)

第一節 日帝의 韓國「保護」化 過程

1. 日英同盟 日帝는 帝政露西亞의 帝國主義的 植民地擴張政策에 대항하는 軍事措置로써 日英同盟을 締結하였다(1902年1月). 이는 當時 韓國에 있어서 日本의 優越的地位를 英國으로 하여금 承認케 하는 동시에 장차 야기될 韓國의 抗日民族運動을 억압하는데 英國의 協力を 確保하고 나아가서 露西亞와의 戰爭에 대비하기 위한 條約이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日帝는 韓國侵略에 重大한一步를 내디딘 것이다.

2. 日露關係 日英同盟으로 日露의 對立은 더욱 침예화 하였다. 義和團事件을(1900年) 理

* 教授,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由로 滿州에 大兵力을 投入시켜 事實上 그곳을 占領하고 있던 露西亞는 마침내 韓國의 龍巖浦에 土地를 買收하여 軍事根據地를 구축하고 (1902年5月) 그 租借를 韓國政府에 要求하였다. (同年 7月) 이 要求는 日本政府의 抗議로 實現되지 못했으나 露西亞는 이곳을 實質的으로 占領해 왔을 뿐더러 滿洲에서도 그 軍隊撤收에 관한 日本政府와의 約束期限(1903年4月8日)을 어기고 오히려 南滿洲에다 軍隊를 增強조차하였다.

이와같이 日露의 對立이 激化되자 1903年4月23日 日本政府의 主腦部는 (一) 露西亞가 滿洲로부터 撤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嚴重히 抗議한다. (二) 滿洲問題를 機會로 韓國問題의 解決을 도모한다. (三) 韓國에 있어서 日本의 優越權을 露西亞에게 承認해 한다. (四) 滿洲에 있어서 露西亞의 優越權을 認定한다는 點을 當面의 對露交涉의 方針으로 삼을 것을 協議決定하였다.⁽¹⁾ 이決定은 6月23日御前閣議에서 對露談判의 國是로서 正式決定되었다. 主腦會談에서 이와같은 對露協商方針을 決定한 動機는 以前부터 韓國을 對象으로 日露의 帝國主義的 植民地擴張政策이 날카롭게 對立되어 數次의 協商을 通해서도 充分한 妥結을 못보았으며 그것은 韓國만을 노리고 兩國이 紛爭한다면 마치 하나의 物品을 2人の 買主가 다투는 格으로 결국 分割占有를 하지 않는限 또는 戰爭으로 決判을 내지 않는限 어느쪽이고 全部를 차지하기는 不可能한 일이었고 특히 日本으로서는 如何한 경우에도 韓國만은 조금도 양보할 수 없다는 立場을 固守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日本은 此際에 일단 韓國과 滿洲를 놓고 協商을 提案해본 것이며 이러한 協商條件은 萬一 日本이 韓國을 支配하는 경우 南滿洲의 側面을 危険당함으로 露國이 不應하리라는 것도 미리 내다보고 결국 對露戰爭까지 覺悟하면서 提案한 것이었다. 그리고 日本의 이와같은 對露一戰不辭의 강경態度의 背後에는 前記한 1902年 1月의 日英同盟으로 세로히 英國의 後援을 얻고있기 때문이었다.

3. 保護化를 위한「韓日議定」 日本政府의 對露交涉은 最後通牒이 提出(1904年 2月6日)되기 까지 계획되었으나 日露戰爭의 宣戰布告(1904年 2月10日)後 불과 二週후에 재빨리 韓國政府에 대해서 다음 「韓日議定書」를 強制하여 이에 調印해 했다⁽²⁾ (1904年2月23日).

第一條 韓日兩帝國間에 恒久不易의 親交를 保持하고 東洋의 平和를 確立하기 위하여 大韓帝國政府는 大日本帝國政府를 確信하고 施設의 改善에 關해 其忠告를 받아들일 것.

第二條 大日本帝國政府는 大韓帝國의 皇室을 確實한 親誼로서 安全 康寧케 할것.

第三條 大日本帝國政府는 大韓帝國의 獨立 及 領土保全을 確實히 保證할것.

(1) 京都의 山縣別邸의 無隣庵에서 伊藤博文 桂太郎(當時總理) 小村壽太郎(外相)등 政府 主腦部가 合同하여 對策을 協議해온. 山邊健太郎著 日韓併合小史 1976. 岩波新書 pp. 148—150.

(2) 日本軍은 2月9日에 仁川近海에서 露西亞艦隊를 奇襲擊破하고 陸軍은 이미 8日 仁川에 不法 上陸 즉시로 서울에 入城하여 韓國政府를 크게 놀라게 했다. 이에 앞서 對露勝戰을 自信한 日本政府는 1903年12月에 「對露交涉決裂ノ際日本ノ採ルベキ對清韓方針」을 閣議에서 確定하고 그 着手時期를 노렸던 것이다. 거기서 韓國을 日本의 隸屬下에 두려는 意圖가 表示되고 또 韓國과 「保護的 協約을 締結할수 있으면 가장 便宜할 것」이라고 「保護化」의 日本政府의 意圖도 처음 비치고 있었다. 韓國獨立運動史一國史編纂委員會 p. 22 第一節 韓日議定書 中立宣言

第四條 第三國의 侵害에 依해 또는 内亂으로 因해 大韓帝國의 皇室의 安寧 或은 領土의 保全에 危險이 있는 경우는 大日本帝國政府는 速히 臨機必要한 措置를 取할 것 그리고 大韓帝國政府는 有大日本帝國政府의 行動을 容易하게 하기 위해 充分한 便宜를 提供할 것.

大日本帝國政府는 前項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 軍略上 必要한 地點을 臨機收用할 수 있을 것.

第五條 兩國政府는 相互의 承認을 거치지 않고 從來本協約의 趣意에 違反할 協約을 第三國과의 사회에 樹立하지 못할 것.

第六條 本協約에 關連하는 未悉한 細條는 大日本帝國代表者와 大韓帝國外部大臣과의 사이에 臨機協定할 것.

明治 37年 2月 23日 特命全權公使 林權助

光武 8年 2月 23日 外務大臣臨時署理 陸軍參將 李址鎔

以上의 議定書는 韓國政府關係高官에 대한 懷柔와 買收 또는 威迫을 통해 密約形式으로 締結된 것이며⁽³⁾ 특히 第一條에서 「大韓帝國政府는 大日本帝國政府를 確信하고 施設의 改善에 關해 其忠告를 받아 들일 것」이라고 規定됨으로서 日本政府는 實質上 韓國을 「保護國」化내지는 植民地화한 것이며 또 第四條에서 韓國內의 如何한 土地도 日本이 「軍略上 必要한 地點을 臨機收用할 수 있을 것」이란 規定은 韓國이 實質上 日本의 主權下에 隸屬되었음을 意味하는 것이었다.

이와같이 議定書의 締結로 日帝는 主로 軍事上의 利權을 確保하고 韓國을 實質上 「保護國」化하자 뒤이어 日露의 戰局도 日本에게 有利하게 展開됨에 따라 議定書의 內容을 더욱 進展시켜 經濟侵略을 하기위한 事前工作으로서 同年 5月 日本閣議는 「帝國의 對韓方針」을 決定해서 「帝國은 韓國에 對해 政治上 및 軍事上에 있어 保護의 實權을 거두고 經濟上에 있어서 더욱 我利權의 發展을 圖謀할 것」을 公式으로 確認하였고 다음 同年 12月閣議에서 決定한 「對韓施設綱領決定의 件」에서 韓國의 軍事的 防備와 外交, 財政의 監督 및 交通通信의 掌握과 拓植을 圖謀하는등 經濟侵略의 計劃을 더욱 明確히 하였다.

4. 顧問政治 한편 同年 8月22일에는 第一次韓日協約인 「韓日外國人顧問傭聘에 關한 協定書」를 締結함에 顧問政治를 實現하였다.

同協定書는 韓國政府의 財政 및 外交顧問으로 日本政府가 추천하는 日本人一名과 外國人一名을 각기 僱聘하여 關係事項은 一切 그 意見을 들어 施行하여야 한다는 內容으로서⁽⁴⁾ 日本은 이 두 顧問의 僱聘强制를 前後하여 何等 條約의 根據도 없이 自進招請한다는 形式을 빌리서 各部에도 모두 이와 大同小異한 顧問을 차례로 두게 하여 所謂 顧問政治體制를 確立한 바 있다. 이로서 財政顧問 目賀田는 合併을 準備하기 위한 財政 金融面의 基礎工作을, 外交

(3) 이 「密約」締結의 韓日交涉은 1904年1月11일에 「韓日密約 締結ノ豫想並韓廷ノ懷柔大體成功ノ狀況報告ノ件」이란 報告가 日本外務省에 到着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1903年末頃부터着手된 것 같다. 山邊健太郎著前揭書 pp. 152—155.

(4) 日本外交文書 第37卷 第1冊 pp. 350~381 事項六 「日韓協約締結의 件」本協定으로 大藏省主税局長 目賀田種太郎을 財務顧問에 또한 美人 「스타문손」을 外交顧問에 就任케 했다.

顧問은 우리나라 海外公使를 철폐하고 外交上 保護附庸化의 作業을, 軍部顧問은 우리나라 軍隊를 解散시키는 作業을, 또 内部의 警務顧問은 우리나라 警察을 料理하는 일을, 그리고 宮內部顧問은 宮內部를 監督하는 일을, 또한 學部參與官은 植民地教育體制를 잡는 作業등을 各己擔任케 함으로써 植民地化 方案을 共同으로 推進한 것이며 특히 이들 各顧問밑에는 補助官이란 名目으로 10名 乃至 100餘名의 日人을 두어 內政干渉을 積極化하였다.⁽⁵⁾

다시 日本은 露日戰의 勝勢에 便乘하여 우리나라를 保護國化하는 條約을 强行하고자 關係列強의 諒解를 받는 등 綿密한 計劃下에 事前工作을 하였다. 즉 1905年8月에는 英日同盟(第2次) 및 桂·태프트秘密協定⁽⁶⁾ (7月)을 締結하여 日本의 韓國에 대한 政治經濟軍事上의 特殊權益을 英·美兩國에 認定케 하고 다시 「日露講和條約」(9月)에서는 「러시아」에게도 이를 認定케 하였다. 한편 日本은 同年 4月8일에 「韓國保護權確立의 件」을 内閣에서 決定하고 다시 同年 10月27일에는 그實行에 關한 關議決定을 하였으며 이에 의거해서 마침내 1905年 11月 17일에 서울에서 大韓帝國의 外交接受를 主旨로하는 所謂 「乙巳保護條約」(第2次 韓日協約)이 强要되었다. 同條約으로 韓國에 대한 日帝의 保護權이 確立된 것이며 韓國殖民地化의 過程은 急速度로 進行된 것이다. 그것은 前記한 「日韓議定書」에 의하여 確保된 日本의 支配權을 日本의 軍事力を 背景으로 軍事的側面(議定書第4條)에서 政治的經濟的方面으로 全面적으로 擴張한 것이라 하겠다.

第二節 「保護」統治體制의 構築

1. 「保護條約」「保護條約」에 의하여 韓國의 外交權을 完全히 박탈하고 (第一條, 第二條) 韓國을 所謂 「保護國」으로써 政治·經濟的 內政까지 支配하고자 「韓國統監府」體制를 構築한 것이다. 第3條는 統監府의 設置를 規定한 것인바 即 「日本政府는 其代表者로서 韓國 皇帝陛下의 闕下에 一名의 統監(Resident General)을 두되 統監은 오르지 外交에 關한 事項을 管理하기 위해서 京城에 駐在하여 親히 韓國皇帝陛下에게 內謁할 權利를 有함. 日本政府는 또한 韓國의 各開港場 及 其他 日本政府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地域에 理事官(Resident)을 둘 權利를 有함. 理事官은 統監指揮下에 從來在韓國日本領事에게 屬하였던 一切의 事務를 掌理함」⁽⁷⁾이라는 規定에 의하여 日本 政府는 同年 12月 20일 「統監府 及 理事廳官制」를 公布하고 翌 21일에는 「韓國侵略의 元兇이며 樞密院議長인 伊藤博文이 初代統監으로 任命되고 1906年 1月 31日字로 駐韓 日本公使館이 閉鎖됨으로써 大韓帝國에 대한 日本의 統監統治가 開始되게 되었다.

(5) 日館記錄「1905年 雇外國人」p.56.

(6) 그 내용은 美國이 日本의 韓國에 대한 政治, 經濟, 軍事上의 利益을 認定하는 대신 日本은 美國의 比律賓에 있어서의 諸利權을 認定한다는 것으로 極東에 대한 侵略을 相互保障하는 것이었다. 日本首相桂太郎와 美陸軍長官 Taft 間에 締結된 相互援助協力秘密協定이 있다.

(7) 金正明編, 日本外交資料集成, 6(中) 東京, 巖南堂書店, 1964 文書番號, 「韓國保護權確立 ノ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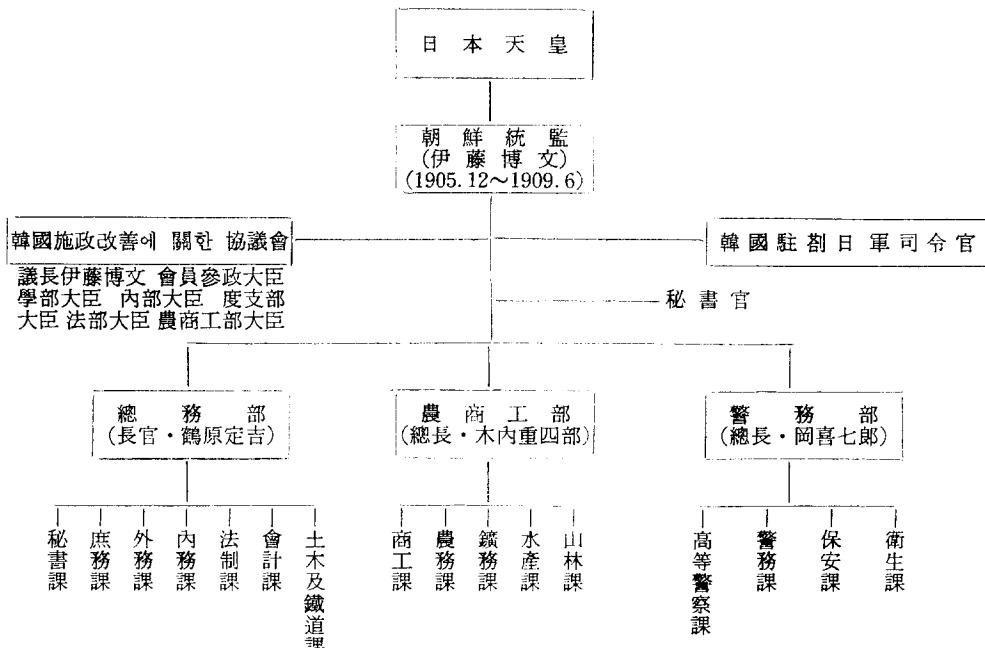
「統監府 및 理事廳官制」의 概要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韓國「서울」에 統監府를 두고 統監府에 統監(親任官)을 두며 統監은 天皇의 直屬하에 外交에 關하여는 外務大臣을 經由한 후 内閣總理大臣을 經하고 其他 事務에 關하여는 内閣總理大臣을 經하여 裁可를 받는다. 統監은 韓國에 있어 日本政府를 代表하고 韓國에 있어서 外國領事館 및 外國人에 關한 事務를 統轄하며 韓國의 安寧秩序를 保持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는 韓國守備軍의 司令官에 대하여 兵力使用을 命하고 또한 日本官吏 其他의 者로서 韓國政府에 雇傭된 者를 監督하고 나아가서는 管轄官廳의 命令 또는 處分이 條約 또는 法令에 違背되어 公益을 害하거나 또는 權限을 犯하였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의 命令 또는 處分을 停止 또는 取消할 수 있는 등 同 統監은 韓國에 있어 日本政府를 代表하여 大韓帝國의 外交, 行政, 軍事등 施政一般에 關한 廣範한 權限을 保有한 것이다.

한편 韓國內에 必要한 곳에 理事廳을 두고 理事官은 統監의 指揮監督을 받아 從來 韓國在勤領事에 屬하였던 事務와 條約 및 法令에 의거하여 理事官이 執行하여야 할 事務를 관장하였으며 安寧秩序를 保持하거나 또는 韓國의 施政事務를 執行하는데 緊急必要가 있는 경우에는 當該地方 軍隊나 官憲에게 緊急指示를 내릴 수 있었다.⁽⁸⁾

2. 統監府組織

前記 官制에 따른 統監府의 内部組織은 다음과 같다.⁽⁹⁾



※二代統監 曾爾荒助(1909. 6~1910. 5) 三代統監寺内正毅(1910. 5~1910. 8)

※韓國駐劄日軍司令官 長谷川好道

※1907年 3月에 外務部가 追加됨. (外務總長・鍋島桂次郎)

(8) 金正明編 前掲書 文書番號54 統監府及理事官制.

(9) 議政府總務局官報課, 官報 光武9年 12月21日字 號外

「韓國施政改善에 關한 協議會」는 統監伊藤博文이 서울에 부임하자 곧 그의 官舍에 召集한 非公式機構로서 1906年3月에 第一回協議會가 開催된 以來 1909年12月의 第97회까지 즉 韓日合併直前까지 持續되었다. 그러나 會議內容은 統監府와 韓國政府間의 意見調整 또는 「協議」가 아니고 언제나 日本側이 提出한 案件을 韓國의 各大臣에게 強制로 承認케 하는데 불과 했으며 때로는 韓國側에게 異議가 提起되었던 것으로 議事錄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統監府 밑에는 1906年 1月 19일에 統監府令 第6號로 釜山, 馬山, 群山, 木浦, 京城, 仁川, 平壤, 鎮南浦, 元山 及 城津 등 10個所에 理事廳을 두었으며(後에 13個所로 增加)同年 11月에는 水原, 海州, 公州, 全州, 光州, 普州, 咸興 及 鏡城 8個所에 支廳을 두었다.(後에 11個所로 增加)

初代 統監 伊藤博文이 韓國 軍團 日本陸軍을 統帥하는 元帥의 資格도 兼해서 3月에 서울에 着任하였다. 韓國에 있던 列國公使는 철거하고 在外 韓國公館은 모두 廢止되었다. 伊藤博文은 日本軍의 武力を 背景으로 主權을 着着 박탈하고 經濟的利權을 약탈하는 동시 内政의 實權을 장악하였다. 朴齋純良國奴內閣이 民衆의 反對運動으로 辞職하자 伊藤博文은 李太王의 強力反對에도 不拘하고 李完用親日內閣을 組織하게 하고(1907年5月23日) 内閣官制도 日本式으로 改革하여 宮廷勢力의 政治干與를 排除함으로서一切의 政治에 實質上의 影響을 미쳤다. 이와같은 日帝의 侵略過程이 우리겨레의 民族的抗拒에 직면했음을 當然한 일이었다. 따라서 日本側의 모든 犯略政策의 實施는 모름지기 이른바 「治安保持의 確立」 다시 말하면 「抑壓體制의 確立」을前提로 해서 强行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韓民族이 그 自立的要求를 強力히 提起하면서 闘爭活動을 展開하자 日帝의 抑壓體制는 더욱 深化되고 徹底化되어 갔다. 특히 1907年 6月 「홀랜드」의 「해이그」에서 開設된 第二回 萬國平和會議에의 密使派遣事件을 계기로 하여 丁未七條約(1907年 7月20日 統監伊藤博文과 大韓國內閣總理大臣 李完用 사이에 調印됨)이 強要되었는데 이 新條約에 의하여 統監은 韓國政府의 施政改善를 指導하는 位置에 서서 法令의 制定及 重要한 行政上の 處分등을一切 그의 承認을 받도록 함으로써 立法, 司法, 行政, 全般에 걸친 統治權을 專擔할 수 있게 되었으며 軍隊解散이 强行되었다. 其執行機關으로는 앞서의 朝鮮制度를 廢止하고 韓民政府의 各部次官을 비롯한 重要한 官職에 日本人을 任用하는 길을 열어 놓았으며⁽¹⁰⁾ 또한 이 新條約 實行을 위해서

(10) 海牙密使事件이 있은 以後 日本은 다음과 같은 丁未 七條約을 強要하여 全般的인 統治權에 干涉하였다.

第一條 韓國政府는 施政改善에 關하여 統監의 指導를 受할 事

第二條 韓國政府의 法令의 制定及 重要한 行政上の 處分은 미리 統監의 承認을 經할 事

第三條 韓國의 司法事務는 普通行政事務와 此를 區別할 事

第四條 韓國高等官吏의 任免은 統監의 同意로써 此를 行할 事

第五條 韓國政府는 統監이 推薦한 日本人을 韓國官吏에 任命할 事

第六條 韩國政府는 統監의 同意없이 外國人을 傭聘치 아니할 事

第七條 明治 37年 8月 22일 調印한 日韓協約 第1項을 廢止할 事(備考 同第1項은 「韓國政府」는

새로운 覺書가 交換되어⁽¹¹⁾ 裁判, 監獄, 徵兵制 등을 改正함으로써 植民化를 着着 準備한 것이다.

그리고 前記한 新條約의 形式上 文脈으로는 統監은 自己가 추천하는 日本人을 韓國國務大臣에 任命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同條約에 附帶한 施行細目規定으로 當分間 日本人官吏任命의 範圍를 各部次官 以下의 重要官職에 限定케 하고 國務大臣은 永遠히 韓人을 登用하게 한 것이다. 이는 虛名보다도 實利를 쫓고자 한 伊藤의 奸智한 人事政策의 所致라 하겠으며 韓人大臣의 밑에 있는 日本人 次官으로 하여금 實權을 掌握케 한 것으로 이른바 「次官政治」의 具現이라 하겠다. 또 日帝는 密使事件을 口實로 高宗을 强制讓位시키고 無力한 純宗을 옹립해서 그 支配를 一層强化하였다.

뒤이어 1907年 8月에는 統監의 職權을 擴張하여 統監은 韓國에서 帝國政府를 代表하여 條約及 法令에 의기하여 諸般政務를 統轄할 수 있게 統監府組織을 改正하였고 同年 12月에는 各部의 官制를 改正하여 局課를 疾合하고 事務의 簡素化와 統一을 期하는 동시에 속속 日本人을 韓國政府要職에 任用함으로써 各官廳의 어느곳을 莫論하고 日本人官吏가 없는 곳이 없게 이르렀으며 1909年 1月 現在 韓國政府에 任用된 日人官吏數는 高等官 466名, 判任官 1,614名, 計 2,080名과 日人巡查 1,548名에 이르렀다.⁽¹²⁾

統監府가 設置되면서부터 諸般 政策形式은 그 政策이 大韓帝國政府에 의하여 發議된 것인가 또는 統監府에 의하여 發案된 것인간 間에 모두가 統監의 承認을 得한 후에 形式上으로 大韓帝國 皇帝의 裁可를 얻는 節次를 取했으며 이의 執行은 그의 指揮監督下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統監府初期부터 構成된前述한 「韓國施政改善에 關한 協議會」도 實質的으로는 統監의 1個 諮問機關에 不過한 것이었다.

3. 治安體制 한편 이와같은 侵略過程을 뒷받침하는 日帝의 「治安確立」을 위한 「抑壓體制」도 憲兵警察體制, 交通·通信體系및 教育과 文化體制등 諸分野에서 完成되어 갔다. 憲兵·警察體制가 直接抑壓力으로서 가장 有力하였음은勿論이었다.

즉 1905年1月 警視廳 警視 丸山重俊이 韓國政府의 警務顧問으로 就任한 以來 그의 補佐機關을 中央과 各道에 韓國의 警務組織과 對應시켜 配置하여 事實上 韓國警察의 全權을 掌握하였다. 나아가서 1907年10月에는 警務顧問制度를 疾止하여 韓日警察을 統合하고 韓國警察官을 當該 日本官憲의 指揮監督下에 두었고 1909年7月에는 「韓國司法 及 監獄事務委託에 關한 覺書」를 通해서 韓國司法權을 탈취했으며 다시 1910年6月에는 韓國의 行政警察權을 日

日本政府의 推薦하는 日本人一名을 財政顧問으로 韓國政府에 僱聘하여 財務에 關하는 事項은 모두 其意見을 詢하야 施行할 事」라 하였음)

- (11) ① 韓日兩國人으로 組織하는 裁判所를 設置할 것.
② 監獄制度의 改正
③ 徵兵法을 實施하고 軍備를 整理할 것
④ 日本人을 韓國官吏에 任用할 것

- (12) 朝鮮併合十年史, 大東出版協會 p.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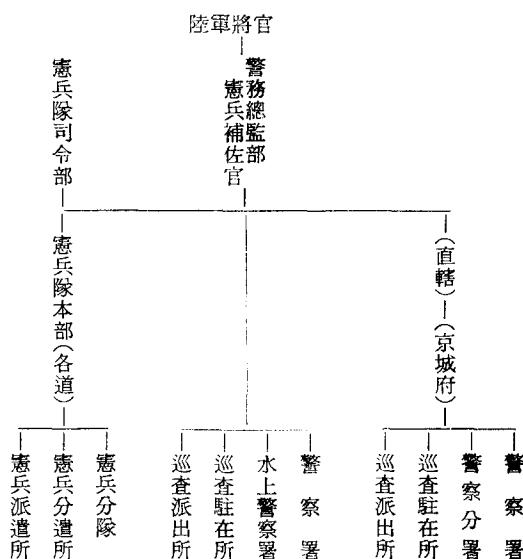
本에 委託케 함으로써 韓國의 警察事務를 完全히 日本의 手中に 장악한 것이다.

한편 激化하는 民族獨立運動을 抑壓하기 위하여 警察業務에 관해서는 朝鮮駐屯 日本軍隊의 關與가 本格化되었다. 즉 1906年 8月에는 서울에 駐在하는 韓國駐屯軍司令官이 韓國防衛를 담당하였다. 이것은 外形的으로 韓國防衛라는 對外的 國防任務에만 연결시키고 있었지만 內容的으로는 國內的 警察任務에 깊이 침투하고 있었으나 이미 露日戰爭以來 日本의 駐屯憲兵隊가 韓國人 武力抗日鬪爭을 鎮壓한다는 名目으로 韓國內 保安警察機能에 關與하기 시작하였으며 그것은 급기야 一般行政 내지 司法警察에까지 日本 憲兵隊가 직접介入하게 되었다.⁽¹³⁾

舊大韓帝國에 대한 日本의 警察權은 (1) 警務顧問系 (2) 統監府 警察系(統監府警務部→各理事廳警察) 및 (3) 日本 本國 外務省 警察系(領事裁判權에 의한) 등으로 三元化되어 갔다.

이것이 1907年 10月 治安上不安을 느끼자 統監府警察系를 廢止하고 統監麾下의 軍司令官으로 하여금 軍事警察을 장악케 하고 主로 이를 韓國의 治安維持를 담당 함으로써 韓國에 있어서 日本 軍事警察의 部分的一元化를 期했으며 다만 一般韓國人 日本人에 대한 警察事務는 韓國政府에 초빙된 日本人이 이를 담당하게 하였다. 뒤이어 1908年 憲兵補佐員制를 實施하여 憲兵의 數는 補助員 4,392名(韓國人)을 包含해서 總員 6,761名에 達하여 統監府設置當時에 比해 8倍가增加하고 그分隊·分遣所도 212個所에서 453個所로 增加하였다. 마침내 1910年 6月 24日 韓國警察 事務의 委任에 따라 韓國과 日本의 兩警察組織을 統監麾下로 統合

憲兵·警察機構(1910. 6—1919)



(13) 朝鮮總督府編 施政二十五年史 pp. 29—30. 京城 昭和 10年

시켰으니 여기서 軍事警察인 憲兵과 一般警察이 完全히 合一된 憲兵警察 體制가 確立되었던 것이다. 그 憲兵警察機構는 앞의表와 같으며 이 體制는 1919年 齋藤總督의 機構改革으로 普通警察制度로 變革되기까지 併合後에도 抑壓體制로서 持續되었다.

한편 抑制體制의 機動性을 위하여 交通通信道路의 整備統制가 政治 軍事 經濟上의 繫要한 對韓政策의 核心으로써 推進되었다. 그중 鐵道事業은 中國大陸에의 軍事侵略의 「幹線」으로써 重要視되었다. 1906年 9月 모든 軍用鐵道를 統監府가 인계 총괄하고 1909年에는 鵝綠江架橋와 平南線부설에着手 全線運輸의 確保를 期하였다. 그리고 道路는 1907年부터 「治安의 保持」를 위하여 「最急務」事業으로서 그 一部修築工事が 推進되었다. 또한 經濟, 社會, 教育, 文化등 諸領域에 대한 彈壓이 지양되었으나 다음節에서 論及하기로 하겠다.

이와같이 韓國의 外交, 內政, 警察 軍事등 모든 施政權限을 統監府의 支配下에 넣은 「保護」統治體制를 구축하자 그 抑壓體制를 背景으로 1909年에는 「對韓政策 確立의 件」을 日本閣議에서 決議함으로써 韓國을 併合하여 名實共히 日帝의 植民統治下에 둘 것을 確定하였다. 이는 바로 安重根義士의 伊藤暗殺의 三個月餘나 以前의 일이며 一進會의 合併聲明보다 5個月前의 일이었다.

第三節 統監府時代의 大韓帝國 統治組織의 變革過程

統監府時代에 있어서는 甲午, 乙未兩改革을 통하여 이루어진 朝鮮王朝傳來의 統治組織을 다시 크게 手術을 加하여 整備하였다. 다음 1907年에 改正된 中央各部組織에 관한 官制를 中心으로 變革過程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 中樞院 「保護條約」¹⁴⁾ 締結되기 約 9個月前인 1905年 2月에 公布된 官制中 中樞院의 編制는 다음과 같다.

中樞院은 皇帝를 보필하는 最高諮詢 機關으로서 議長 1人(親任), 副議長 1人(勅任), 賛議 8人(勅任), 副贊議 15人(奏任), 參事官 또는 書記官 3人(奏任), 主事 4人(判任)으로 構成되어 漢城에 2人, 道에 각 1人을 才識있고 民望있는 者로 選任하되 우선 그 審查議定事項으로 (i) 議政府로부터 諒詢하는 軍國主要事項과 法律勅令의 制定 및 改廢에 關한 事項 (ii) 法律勅令의 實行效果와 其未備事項에 대한 建議事項. 이중 副贊議는 漢城府尹 및 各道觀察使가 2人 혹은 3人을 추첨하면 議政大臣이 議長 副議長과 協商한 후에 첨거 상주하여 裁可를 얻는다. 또한

(iii) 法律勅令實施에 關한 建議事項 그리고 특히

(iv) 人民獻議에 關한 事項 등을 審查 議決한다.⁽¹⁴⁾

中樞院의 運營方法을 살펴 보면 議長과 賛議가 前記한 議定事項에 대하여 可否議決한 후

(14) 法提摘要 光武 9年 11月調 pp. 244—246.

現行韓國法典 全度支部大臣官房編纂 pp. 113—120. (光武 9年 3月 1日字 勅令 第12號 中樞院官制)

이를 議政府에 조회 또는 說明하여 만일 議政府와 中樞院이 意見의 合致를 보지 못하는 경우는 國務大臣이 中樞院에 參席하여(部下官吏를 代理參席시킬 수 있음) 議案趣旨를 辨明하도록 하였다. 또한 中樞院에 顧問 6人을 두되 一年以上 政府大臣의 親任職을 經한 者 중에서 任命하고 他官職을 兼할 수 없게 하였으며 議政府로부터 諮詢한 軍國重要事項은 議長이 顧問을 會同시켜 收議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밖에 中樞院會議는 議員 3分의 2 以上이 出席치 않으면 開會할 수 없었다. 이와같이 中樞院의 組織과⁽¹⁵⁾ 機能은 王朝末葉의 獨立協會運動의 一環으로 생긴 中樞院 即 立憲制君主體制下에서의 議院內閣制의 國會의 組織을 모방한 것을 變革하여 訂正한 것으로 어느 程度의 民主的要素를 찾아 볼 수 있는 것이었다.⁽¹⁶⁾

2. 内閣 및 地方制度 그리고 1907年6月의 内閣官制(勅令第35號)로 從前의 議政府는 内閣으로 議政府大臣은 内閣總理大臣으로 改定되었으며 改定된 官制下에서는 前記한 中樞院制를 形式上機構에 不過하나마 그대로 存續시키고 있는 동시에 國務大臣(内閣總理大臣 及 行政各部大臣)은 皇帝를 補弼하고 國政을 處理한 責任을 지며 法律勅令은 모두 内閣總理大臣 및 關係大臣이 副署하게 하였다.

内閣會議를 거쳐야 할 事項은 (i) 法律案, 勅令案, (ii) 豫算案, 決算案 (iii) 豫算外支出 (iv) 各部間主管權限의 爭議 (v) 文武勅任官責任官의 任命進退 (vi) 叙品及 叙勳 (vii) 大赦及特赦 등이며, 그밖에 内閣總理大臣은 必要한 경우에는 언제나 内閣會議를 召集할 수 있고 閣議는 秘密히 하였고各大臣 3分之2 以上이 合席치 않으면 開會할 수 없었다. 또한 閣議의 議決은 多數可決制에 따랐으며 可否同數인 경우에는 内閣總理大臣이 決定했다. (内閣會議規程 勅令37號)

뒤이어 1908年 10月에는 文官銓衡委員制(閣令10號)가 發布施行되었는 바 이에 의하면 銓衡委員을 高等銓衡委員과 普通銓衡委員으로 區分하여 前者は 内閣에 그리고 後자는 内閣及各部에 두고 또 高等銓衡委員은 委員長 1人 委員若干人으로 組織하여 勅奏任文官에 關한 銓衡事務를 관장하고 普通銓衡委員은 委員長 一人 委員若干人으로써 組織하여 判任文官及判任官待遇者에 關한 銓衡事務를 관장하였다. 그리고 銓衡委員은 必要한 경우 筆記 또는 口述試驗을 課할 수 있었다.⁽¹⁷⁾

무릇 上記 文官銓衡考所는 文官公開普通試驗을 管理하는 合議制人事機構의 始初라하겠고 또 文官銓衡委員制는 近代의인 資格任用制로 發展하는 過渡期의인 制度로서 意義가 있는 것 이었다.

1907年 12月의 官制改革에서는 中央의 內部管轄의 主要外廳으로서 從前의 警務廳이 警視

(15) 掖著 朝鮮王朝行政史—近代篇—pp. 278—280 一潮閣 1970.

(16) 現行韓國法典 後揭書 pp. 116—120 中樞院議事規則 光武 4年8月6日 議政府令 第1號

(17) 法規續編, 上, pp. 16—17 內閣記錄課隆熙 2年 4月 日發行

廳으로改定되어 警察制度가 整備되 있는데 警視廳의 警視總監은 内部大臣의 指揮監督을 받이 皇宮과 漢城府에 있어서 警察, 消防 及 衛生事務를 掌理하고 各部主務에 관한 警察事務에 對하여는 各部大臣의 指揮監督을 받았다. 특히 1907年 官制改革에서 地方官制의 改革이 重點的으로 斷行되었는데 其中 徵稅法의 改正, 新裁判所의 設置 및 警察制度의 改正 등으로 從來 郡守의 權限에 屬했던 徵稅 司法 警察에 關한 職權이 縮少된 關係로 郡守는 순전히 行政官의 地位로 低落되었으며 觀察使 밑에는 日本人書記官 및 警視, 警部 등을 配置함으로써 이들이 다시는 往年과 같은 收斂暴虐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많은 觀察使와 郡守中에는 이와같은 改革에 여러가지 理由에서 不快感을 갖고 協調하지 않는 者도 있었을 뿐더러 抗日義兵運動이 各地에서 展開되었기 때문에 地方行政의 紊亂을 免치 못했다. 마침내 1908年 6月에 農商工部大臣 宋秉畯이 세로이 内部大臣으로 農商工部次官 岡喜七郎이 同次官으로 轉任한 同時に 觀察使의 大更迭을 斷行하여 年老하고 排日의 官僚를 淘汰하고 新進의 親日人士로서 그 大部分이 往年에 日本에 亡命했던 者들로서 代置하자 日本官憲과 協商하면서 施政의 改革이 斷行되었다.

특히 地方警察制度의 改革, 道廳의 移轉, 郡의 廢合, 府尹, 郡守會議의 開催, 郡守任用令의 改正 및 日本人官吏의 地方廳配置 등을 斷行함으로써 地方行政의 整備를 피한 것이다.

또한 1907年12月의 官制改革에서 金融機關을 整備하여 中央銀行인 韓國銀行을 創設하고 既存의 官私銀行과 金融組合등의 擴張을 圖謀했다. 1906年에 外部가 廢止되고 1909年에 法部와 軍部가 廢止됨으로써 韓日合併當時의 中央行政編制는 다음 圖表와 같이 變革되었다.⁽¹⁸⁾

여기서 統監府時代에 있어서의 一般統治組織과 機能面에서 나타난 特徵의in 事項을 列舉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로 內閣體制가 크게 整備되었다.

甲午·乙未兩改革에 의한 內閣制度가 俄館播遷以後 舊體制로 復舊되고 國王의 權限이 크게 擴張되어 內閣의 機能自體가 國王에 의하여 많은 制約를 받았으나(議政府로의 還稱, 國王의 無限君主權, 國王의 大元帥君臨等) 1904年的 韓日議定書 締結後의 議政府官制의 改

(18) 隆熙 1年 12月 28日字 勅令 第37號 内部官制.

隆熙 2年 1月 25日字 内部分課規程.

隆熙 1年 12月 18日字 勅令 第39號 警視廳官制.

勅令 第41號 度支部官制.

隆熙 2年 1月 27日字 度支部分課規程.

隆熙 4年 3月 15日字 勅令 第23號 土地調查局官制

隆熙 1年 12月 29日字 勅令 第68號 會計檢查局官制.

隆熙 2年 8月 13日字 勅令 第59號 建築所官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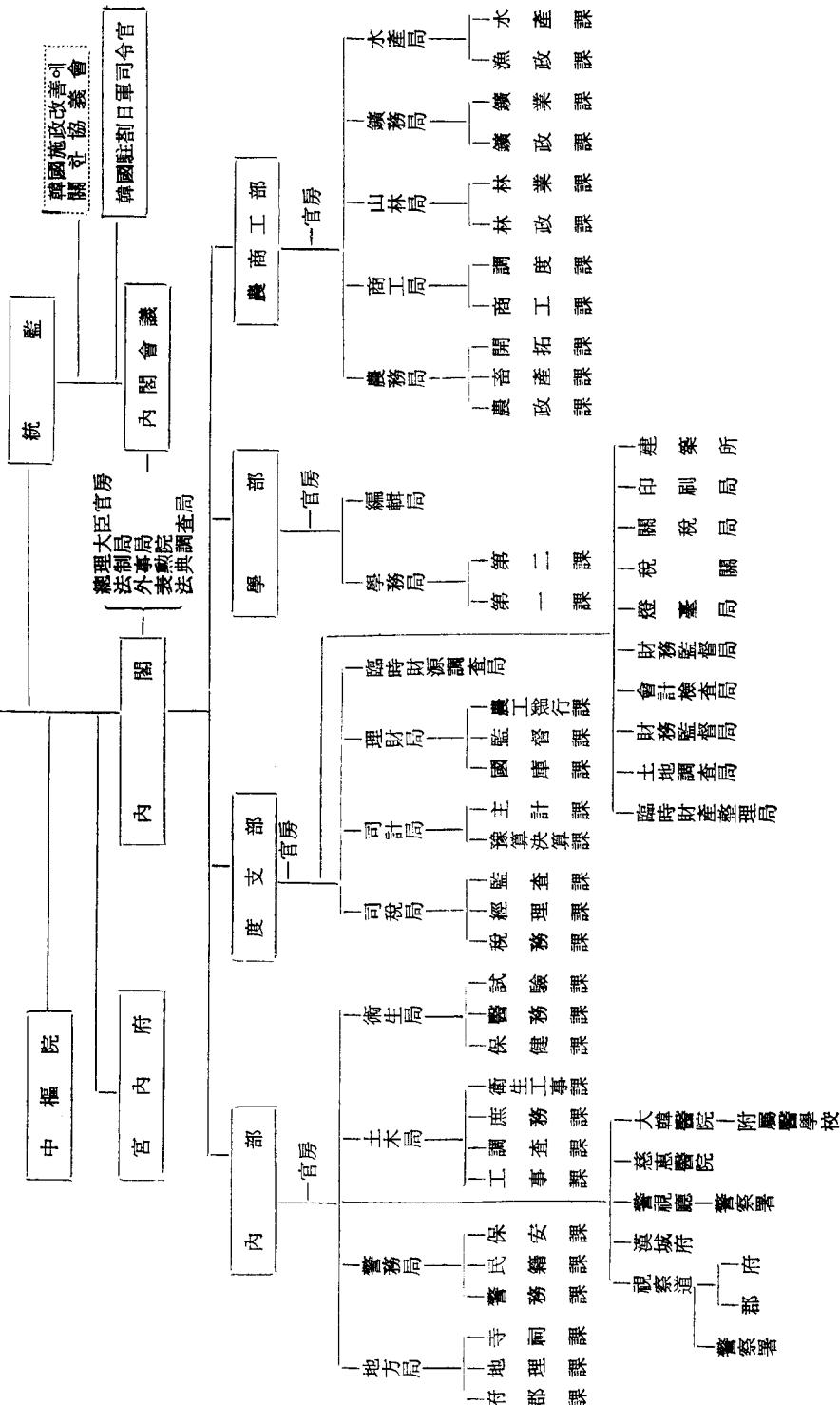
隆熙 4年 3月 10日字 勅令 第18號 關稅局官制.

隆熙 1年 12月 18日字 勅令 第46號 財務監督局官制.

" 勅令 第54號 學部官制.

" 勅令 第57號 農商工部官制.

中華各部相對項目會計當時



正(1904年 3月 4日子 勅令 第1條)에 의하여 비록 議政府라는 名稱은 그대로 存續시키면서 노 石土의 權限을 크게 縮小시켜 内閣의 地位를 向上시켰다. 그리고 同議政府는 1907年에 内閣으로 다시 改稱되게 되고 内閣으로서의 地位를 確固히 하였다. 이와같이 内閣體制를 具備하게 된 것은 첫째는 統治組織의 近代化를 意味함과 同時に 둘째는 國王의 君主權의 衰退를 意味하는 것이다.

1907年에는 内閣官制, 内閣所屬 職員官制 及 内閣會議規程을 改正하여 從前의 「議政府」를 「内閣」으로 改稱하고 「議政府大臣」을 「内閣總理大臣」으로 改稱함과 同時に (勅令 第42條) 大要 下記要旨의 内閣官制를 公布하여 (勅令第1條) 内閣體制를 더욱 整備하였다.

- 1) 内閣은 國務大臣(内閣總理大臣 及 行政各部大臣)으로 組織함. (第1條)
- 2) 法律勅令은 内閣總理大臣 及 關係大臣의 副署를 要함. (第6條)
- 3) 下記事項은 内閣會議를 經由하여야 함. (第7條)

ㄱ. 法律案 勅令案 ㄴ. 豫算案 決算案 ㄷ. 豫算外支出 ㄹ. 各部主管權限의 爭議 ㅁ. 文武勅奏任官의 任命進退 ㅂ. 叙品 及 叙勳 ㅅ. 大赦 及 特赦 ㅇ. 其他各部主管事務로서 重要한 政策事項

둘째로 立法 · 行政 · 司法 三權의 權限分立이 爽ter오기 시작했다.

비록 近代的인 議會制度는 마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内閣制度가 整備되어 나감으로써 君主의 從來의 國政總攬者로서의 地位가 削奪되어 나가는 代身 内閣에 의하여 政策이 形成되어 나감으로써 政策의 形成機能이 概念上으로나마 執行機能과 區別되기 시작했다.勿論 1896年 以後에 代議機構로서 強化되기 시작했던 中樞院이 統監期에 有名無實化해진 것은 代議制의in 面에서는 後退라고 봐야할 것이다. 그리고 裁判所가 構成되고 司法權이 어느 程度 獨立되어 國權의 分化過程이 促進된 것도 注目할 만하다.

셋째로 統治組織에 機能의 專門化가 나타나게 되었다.

各組織의 職權이 法令에 規定되고 各組織의 分化가 촉진됨으로써 各組織相互間의 機能의 專門化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넷째로 行政에 關한 法治秩序가 維持되게 되었다.

비록 그 「法」은 近代的인 意味에 있어서의 人民의 選出代表로서 構成된 議會에 의하여 制定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에 의해서 行政이 一定한 規制를 받게 됨으로써 行政의 無秩序를 防止하게 되고 官의 慾意的인 裁量權行使을 크게 封鎖하게 되었다.

다섯째로 統治機構가 膨脹되었다.

이 期間에 廢合된 機關도 많았지만 大體의으로 國家機能이 擴張됨으로써 여러 財政機構, 司法機關, 教育機關, 建設機關 등이 새로 設立되거나 增設되게 되었다.

여섯째로 地方行政官署가 一般地方行政官署와 特別地方行政官署로 分化되어 前者は 内部大臣의 一般的指揮監督을 받고 後자는 關係主務大臣의 指揮監督을 받게 되었으며 一般地方

行政 중에서도 業務의 性格에 따라 各己 中央의 該當主務大臣의 業務遂行上 指揮를 받는 體系가 形成되기 始作하였다⁽¹⁹⁾.

일곱째로 内部에서는 地方官制의 改革으로 從來, 徵稅, 司法, 警察의 諸權限을 함께 掌握하였던 郡守는 크게 그 權限을 縮少하고 純粹히 行政官으로서 行政에만 專擔케 함으로써 다시는 往年の 苛斂誅求의 弊端이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觀察使밑에 日本人 書記官 一名 및 日本人 警視, 警部, 主事若干名式을 配置함으로서 植民的統制를 強化하였다.

여덟째로 學部에서는 日帝의 干涉으로 植民化의 政治的社會化를 强行하였다. 즉 普通教育의 普及을 嘉獎하여 教師의 養成, 教科書의 編纂에着手하고 實業學校令, 高等女學校令을 發布하여 實業教育과 女子教育의 發達을 圖謀했으며 1908年에는 私立學校令을 發布하여 私立學校의 排日運動을 嚴重히 取締하였고 마침내 宣教師가 設立한 各宗教學校에도 이를 適用하였다. ⁽¹⁹⁾

3. 裁判所 다음 行政府에 附屬된 裁判所의 構成을 보면 1907年 12月 23日 法律第8號로 公布되고 翌年 1月1日부터 施行된 裁判所構成法에 의하면 裁判所는 區裁判所, 地方裁判所, 控訴院, 大審院 등의 4種이 있었으며 區裁判所는 判事が 單獨으로 裁判을 行하고 地方裁判所 控訴院 및 大審院은 一定數의 判事로 組織된 部에서 合議하여 裁判을 行하였다. 이중 大審院 控訴院 地方裁判所 그리고 漢城裁判所는 甲午更張以來 合併時까지 존속하였다.

各裁判所別로 檢查局을 設置하여 檢查는 公益을 代表하여 刑事에 있어서는 公訴를 提起하고 判決의 執行을 監視하며 民事에 있어서는 必要로 認定하는 경우에 其意見을 陳述케 할 수 있었다. 그리고 警察官과 其他 行政官吏는 檢事의 要求에 따라 그 職務를 補助해야 했다. 또한 各裁判所에는 書記官을 두고 書記課는 裁判所 및 檢事局에 附屬시켰으며 書記는 判事 또는 檢事의 命令에 따라 往復, 會計, 訴訟, 記錄의 調製, 文書의 送達과 其他 底務를 掌理하였다. 그리고 裁判所 及 檢事局의 行政事務와 檢察事務는 法部大臣의 監督에 屬했다. 따라서 當時의 裁判所는 行政府로부터 獨立된 것이 아니었고 裁判所와 檢事局의 機能도 分化되지 않았다.

區裁判所는 民事로 地方裁判所는 民事와 刑事로 各己 裁判權의 範圍가 定해져 있었으며 地方裁判所는 民事 및 刑事의 第二審으로 區裁判所의 裁判에 대한 控訴 및 抗告裁判을 하였다.

控訴院은 地方裁判所의 裁判에 對한 控訴 및 抗告裁判을 擔當하며 大審院은 終審으로 地方裁判所나 控訴院의 第二審判決에 對한 上告 및 控訴院의 裁判에 對한 抗告裁判을 擔當했다. 大審院에 一個 或은 數個의 民事部와 刑事部를 두고 部는 5人의 判事로 組織하고 其一

(19) 法規類編 pp. 359—367.

人을 裁判長으로 했다. ⁽²⁰⁾

4. 宮內組織 다음 宮內組織은 統監府時代에 있어서 가장 激甚한 變革을 거친 후 1907年 度에 一旦 整備가 完了되었다. 1907年 度의 그 編制에 의하면 宮內部大臣 밑에 幕僚機構로 大臣官房(人事, 庶務, 調査 및 主馬管掌)과 系線인 次官이 있고 그 밑에 侍從院* 掌禮院, 承樞府, 皇后宮, 東宮* 奎章閣* 內藏院* 典膳司* 主殿院, 帝室會計監查院* 宗親家 등이 있었으며 1908年以後에는 帝室財產整理局 御苑事務局* 皇宮事察署長 修學院* 등도 追加로 設置되었다. (*표는 韓日合併時까지 존속된 것임) 그리고 侍講院, 景慕殿 璞源殿 永禧殿 各殿墓陵閣 및 承寧府 등도 合併時까지 존속하였다.

以上 統監府時代를 통하여 大韓帝國統治體制는 그 構造와 機能面에서 많은 變革을 치루었다. 그것이 日帝의 植民地化를 準備하기 위하여 外的強制에 의한 것이지만 宮內部編制를 除外하고 一般統治組織와 裁判所構成等에 있어서는 앞에서 論及한 바와 같이 構造上의 分化와 機能上의 專門化가 促進되어 어느程度近代化를 指向한 것이었으며 이들은 大體로 오늘 날의 우리나라 政治行政體制의 基本的母體가 되어 繼續發展되고 있는 點이 注目된다.

第四節 經濟侵略

1. 財政貨幣整理 이 時期에 있어 日帝의 韓國에 대한 經濟侵略政策으로서 가장 重要的 意味를 지닌 것은 財政 및 貨幣整理와 그리고 土地收奪이 있다. 日帝는 韓國에서 財政, 金融을 그支配下에 두고 農業을 完全히 統制下에 두어 食糧, 工業原料, 水產業 鎳山등 資源을 略奪하는 동시 物品販賣市場을 獲得했으며 나아가서 植民地的經濟의 再編成을 準備하였다.

韓國政府의 財政顧問으로 赴任한(1904年10月) 日賀田種太郎(前大藏省主務局長)은 實로 韓國財政上의 全權限을 掌握하게 되었다. 그는 우선當時 朝鮮王室所有이었던 典圖局(造幣局)을 廢止하고 韓國의 「貨幣制度 紊亂의 改善」을 빙자해서 貨幣條例를 公布하여 日本과 同一한 金本位制와 貨幣制度에 의한 新貨幣를 發行하여流通시켰다. 이로써, 日本貨幣는 韓國에서 自由로流通시키게 하고 이 新貨幣의 鑄造는 日本의 大阪造幣局에 委託하고 또 貨幣整理業務의 一切은 日本政府의 監督과 保證下에 日本의 第一銀行의 朝鮮支店에 委任하여 施行하였다.

이로써 日本資本은 國家權力의 積極的援助下에 韓國에 進出하고 第一銀行의 紙幣를 發行

(20) 内閣記錄局, 官報, 開國 504年

皇城新聞, 光武 8年

内閣記錄局, 法規類編, 初編 建陽 元年

議政府總務局, 法規類編, 繕一, 光武 2年

議政府總務局, 官報, 光武 3~10年

法規續編, 下, 官制門

奎章閣日記, 國史編纂委員會版, 高宗 15., 서울, 1968.

하는 中央銀行的役割을 遂行하게 됨에 따라 大韓天一銀行, 漢城銀行등의 民族的金融機關은 從屬的地位에 投下되었다. 이 貨幣整理에 있어서 日本은 舊貨幣(白銅貨, 青銅貨)의 回收로 莫大한 利益을 거두었을 뿐아니라 韓國의 貨幣制度를 日本에 從屬시켜 經濟流通의 關鍵을 장악하고 商品 資本輸出의 確固한 軌道를 구축한 것이다.

2. 土地收奪 日帝는 日露戰爭前後에 이미 廣範한 土地略奪에着手하였다. 즉 木浦, 群山, 大邱, 釜山, 論山等의 기름진 土地를 골라 略奪함에 있어 表面上의 土地所有者를 韓國人으로 거짓 꾸며서 不法手段으로 買收했다. 「統監府」가 設置된 後에는 不動產法調查會를 設置하고 (1905年 7月) 大邱, 平壤, 全州의 量地課出張所에는 日人技師가 配置되어 土地調查를 實施하는 동시에 土地略奪合法化를 위한 많은 法律을 公布實施하였다.⁽²¹⁾ 이와같은 諸法律 및 規則은 바로 所謂「韓國開發」또는「韓國臣民의 福利增進」이라는 口實下에서 其實은 外國人 특히 日本人에 의한 土地의 合法的所有權을 承認하게 하여 그들에 의한 土地略奪을合理화시키는데 있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1905年頃부터 土地調查가着手된 한편 日人 地主·資本家에 의한 土地買收가 着着進行되어 많은 日人農場이 생기고 특히 日本國家資本에 의한 東洋拓殖株式會社(東拓)가 設置되면서 一層 土地買收가 盛行되었다. 東拓은 「韓國農業의 開發」이란 美名下에 莫大한 國家資本에 의하여 韓國의 國有地, 民有地를 買收, 略奪하여 日本農業移民을 誘致해서 韓國侵略의 前哨의役割을遂行한 것이다.

또한 韓國政府 財政顧問 目賀田은 財政의 紊亂을 口實로 帝室財產整理를 强行하였다. 즉 1907年 7月 臨時帝室有及國有財產調查局 그리고 同年12月 「帝室財產整理局」을 設置하여 帝室財產을 調査하고 莫大한 帝室財產을 一旦 國家財產으로 移管했다. 그結果 많은 宮庄土, 驛屯土 等이 國有地로서 統監府의 支配下에 收奪 歸屬되고 이들은 結局 日本에게 略奪當하였다. 當時 土地收奪은 主로 肥沃한 既墾地를 對象으로 各種의 欺瞞의이며 惡辣하고 巧妙한手段으로 자행되었으며 그 方法으로서는 大體로 韓國人名義의 借用 官吏等의 請托을 빙자한自己名義의 登錄, 半永久的인 土地의 使用收益權의 獲得, 貢主名義없는 文書偽造, 抵當證書와 放賣文書의 二重作製等各種手段이 자행되었다. 또한 이 時期에 貿易, 資本進出, 鎳產物, 漁場, 交通運輸通信等을 통한 日帝의 經濟侵略相은 다음과 같다.

3. 其他經濟侵略 日帝는 韓國貿易을 통하여 食糧及 工業原料을 略奪한 동시에 安價한 日

(21) 日帝는 韓國政府로 하여금

土地家屋證明規制(1906年)

土地家屋典當執行規則(1906年)

土地家屋所有權證明規則(1908年)

등을 發布케해서 居留地 뿐만아니라 韓國全土에 있어 日本人의 無制限한 土地所有權을 法적으로 公認했다. 그리고 日本人의 土地收奪方法은 抵當權設定을 통한 高利貸的方法에 의한 것이었으며 또한 國有未墾地利用法(1908年)을 公布하여 東洋拓殖株式會社를 設置하여 土地收奪을 더욱 强行했다.

本產品으로 韓國의 民族經濟 隸屬化를 피하였다. 1901年以來 日露戰爭까지의 韓國貿易은 輸入에 있어 60%以上 輸出에 있어 約 80%를 日本이 占하였으며 韓國의 港口를 出入하는 船舶의 80%以上을 日人이 차지하였다.

露日戰爭以後 統監府支配下에서 日本의 對韓經濟侵略은 더욱 露骨化하여 民族工業에 대한 日本資本의 壓迫은 急速히 強化되었다. 例컨데 統監府의 民族工業會社設立에 대한 壓迫政策으로 1907年에 44件의 會社設立申請에 대하여 2件만이 許可되고 1908年에는 53件申請에 대하여 8件이 許可되었으며 1909年에는 20件申請에 대하여 1件만이 許可된데 不過한 實情이며 이와 對照하여 日本人의 手工業的中小工業進出은 1908年度에 精米業工場 25個, 煉瓦 石灰業工場15個, 鐵工業工場12個, 食料品加工業工場10個, 煙草製造業工場4個, 其他工場 13個 合計79個工場으로 大舉增加하고 있고 그 資本總額만도 210萬圓에 職工總數는 3,245人 生產品總額이 330餘萬圓에 達하고 있는 것이다. ⁽²²⁾

그리고 1908年 現在의 韓國在留日本人의 職業別人口構成을 보면 商業約47,000人 雜業約 17,000人 官公吏約 15,000人 工業約 11,000人 農業約 4,800人 無職約 4,400人 藝妓酌婦約 4,200人 漁業約 3,000人 醫師產婆約 1,100人等에 達하고 있었으며 韓國在留日本人이 1905年에 42,000인이었던 것이 1910年에는 126,000人으로 急增하였다. 또 統監府는 1906年 7月 「鑛業法」및 「砂鑛採取法」을 公布함으로써 鑛山 특히 金鑛의 採掘을 合法的으로 獨占하였으며 「鑛業法」을 빙자하여 每年 鑛業權의 許可를 日人에게 有利하게 확보하여 갔다. 例컨데 鑛業權許可件의 年度別統計를 보건데 1907년에 韓國人27件에 日本人162件(其他外國人25件), 1908년에 韓國人47件에 日本人285件(其他外國人29件), 1909년에 韓國人 145件에 日本人399件(其他外國人31件), 1910년에 韓國人249件에 日本人449件(其他外國人46件) ⁽²³⁾ 等으로 每年 日本人에 의한 許可件數를 增大시키고 있다.

그리고 漁場에 있어서도 日帝는 1908年「韓日漁業協定」을 強要하여 「日韓漁民의 保護取締」라는 名目下에 日本人漁民의 「朝鮮海水產紀合」에는 每年 補助金을 支給하고 그들에게 漁業의 實權을 掌握케 했으며 韓國漁民에 對해서는 여러가지 方法으로 漁業活動을 抑壓하였다. 또 所謂「韓國漁業法」도 公布하여 漁業의 免許制 또는 許可制를 實施했는데 1909年 現在의 許可數는 韓國人 5,436人에 대하여 日本人 2,861人에 達하였으나 韓國人의 漁船數 12,567隻 人員 75,063人에 대해서 日本人의 漁船數는 3,755隻 人員 15,749人로서 漁船數가 3.3倍 人員이 4.8倍나되는 韓國人漁業이 그 漁獲高에 있어서 日本人漁業과 거이 同一한 程度이고 따라서 一人平均漁獲高가 日本人의 4分之1에 不過한 實情이었다.

끝으로 交通, 運輸, 通信面에서 日本의 侵略相을 보면 清日 露日戰爭 遂行과 並行해서 日

(22) 文定昌「軍國日本朝鮮强占 三十六年史」中 pp. 103—104.

(23) 第4次統監府統計年表

帝는 재빨리 韓國에서의 鐵道敷設權을 略奪하고 京釜線 1905年1月開通, 京仁線 1900年 7月 京義線 1906年3月 馬山線(馬山—三浪津)등의 主要幹線을 各已 開通했으며 1906年7月에는 이를 國有로 移管해서 統監府鐵道管理局所管으로 하였다. 이리하여 1910年以前에 이미 1,000餘km의 鐵道를 所有했다. 日帝는 또 京義線과 「滿洲」와의 連結을 目的으로 1909年8月에 鴨綠江架橋에 着手하여 1911年10月에 이를 完成하자 같은 時期에 完成된 安奉線(安東—奉天)과 連結시킴으로써 大陸侵略의 動脈이 形成되게 이룬 것이다. ⁽²⁴⁾

日帝는 鐵道뿐만 아니라 道路·海運에 있어서도 將次의 經濟的 軍事的 侵略을 支配를 念頭에 두고 그 重要手段으로써 整備 建設에 注力하였다. 朝鮮總督府는 1907—1910年期間에 이미 1993km의 幹線道路를 建設하였으며 그道路의 幅이나 橋梁의 規模는當時의 軍隊나 砲車가 自由로이 交叉해서 動員할 수 있게 設計된 것이었다.

또한 日帝는 1910年以前에 釜山, 仁川, 鎮南浦, 平壤, 元山, 新義州, 群山, 木浦, 清津, 城津, 馬山等의 11個所의 港灣修築 稅關設備 工事を 開始하고 近10年間에 걸쳐 整備를 完成하였다. 그리고 日帝는 또 1905年4月 「韓國通信機關委托에 關한 協定」을 強制하고 翌年에는 統監府通信官署官制를 公布하여 通信網을 完全히 掌握하고 1910年以後 그施設을 擴張하였다. 이와같은 日帝에 의한 航路 港灣施設 通信의 整備는 鐵道網과 連結해서 植民地 韓國의 政治, 軍事, 經濟的支配에 큰 寄與를 한것이며 韓國人에 의한 海運, 水運, 通信事業은 보다 抑壓封鎖되었다.

上述한 日帝의 經濟侵略은 韓民族의 脅強한 抗拒에도 不拘하고 武力を 背景으로 計劃的으로 着着强行된 것으로 그것은 앞에서도 論及한바와 같이 1904年10月 日本閣議에서 이미 決定된 「對韓施設綱領」을 基本方針으로 施行한 것이다. ⁽²⁵⁾ 이 綱領들을 着着 實現하여 經濟上, 金融上의 植民地化를 完成한 1910年에 이르러 日帝는 韓日合併을 强行한 것이다.

第5節 反日民族運動의 展開

日帝가 乙巳保護協約을 强行하여 韓民族의 自立權까지 박탈하게 이르자 그 植民地化와 從屬化에 抗拒해온 韓民族은 마침내 全國的規模로 反日鬪爭에 舉起하였다. 本來 이 保護協約은 一般民衆도 모르는 가운데 日帝의 치밀한 陰謀와 強壓에 몰려 民族을 배반한 賣國奴內

(24) 賀田直治「朝鮮ノ鐵道政策ニ關スル研究」p.12.

(25) 同 「對韓施設綱領」은 韓國을 政治的으로나 經濟的으로나 日本의 支配下에 두려는 侵略綱領으로 그것은 要約하면 一. 韓國防備의 保全 二. 外政의 監督, 三. 財務의 監督, 四. 交通機關의 掌握(京釜, 京義, 京元 鐵道 및 元山雄基線과 馬山三浪津鐵道) 五. 通信機關의 掌握 六. 拓植의 圖謀(農業, 林業·礦業·漁業) 등 六項目으로 되어 있으나 「目賀田種太郎」에 의하면 이밖에 七. 警察權의 擴張」을 加해서 「對韓施設綱領七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1905年부터 1910년까지의 時期에서 日帝의 韓國植民地化의 諸般基礎工作은 大體로 이 綱領에 準據해서 推進된 것이었다. 山邊健太郎著日本の韓國併合 pp.281—284. 1975年 太平出版社.

閣의 一部大臣이 參與한 가운데 形式上 締結이 强行된 것이었다.⁽²⁶⁾ 다음해 마침 皇城新聞의 社長兼 主筆 張志淵이 條約을 비방하여 「是日也放聲大哭」이라는 名言으로 有名한 論說로 폭로하자 條約反對運動은 점차 各地方으로 擴大되게 이르렀다. 즉 反日鬪爭은 처음에는個人의 消極的反抗, 宮廷의 外國勢力を 利用한 陰謀的反抗, 個人的 暴力主義反抗 또는 武裝暴動에 의한 反抗등 大體로 個人的인 또는 非組織的인 形態로 나타났으나 漸次 地方의 農民을 中心으로 武裝暴動으로 組織化되고 급기야 舉族의in 義兵運動으로 廣範圍하게 나타났으며⁽²⁷⁾ 또 한편에 있어서는 愛國民族文化 啓蒙運動으로 言論 出版 結社 教育등 各分野에서 활발하게 展開되었으며 나아가서는 租稅不納 日貨排斥 施設利用拒否등 經濟鬪爭에 이르기까지 混民族的으로 展開되었다.

1. 義兵運動 1905年以後의 義兵運動은 日帝의 侵略을 물리치기 위한 民族抗爭이었을 뿐더러 民衆의 反抗運動을 主導한 舊官人兩班層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士林이 指導集團이 되어⁽²⁸⁾ 한편으로는 宮廷, 獨立協會系의 知識人 農民 및 解放軍人까지 大規模로 함께 參加하여 鬪爭한 民族運動이었다.

다면 이와같은 義兵鬪爭의 階級構成에도 불구하고 이 時期의 義兵의 抗日鬪爭은 當時의 舊官人兩班層에 의한 代表의 義兵 崔益鉉등의 要求 즉 「使國復自主之權 民免易種之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와같이 抗日反侵略이 基本 目的이었으며 거기에 가령 農民의 要求에 의한 反封建의 革命的 性格이나 또는 開化知識人の 要求를 대포한 近代化運動의 性格등은 희박하였다. 따라서 愛國文化 啓蒙運動과의 思想의結合도 거의없는 狀態에서 展開되었던 것이다.

이 時期의 義兵運動은 舊官人兩班層에 의한 代表의 義兵 前參贊(書記官長) 崔益鉉의 自主權 要求와 全羅南道에서의 舉兵에 뒤이어 前參判(書記官)으로서 洪州義兵의 敗將 閔宗植은 1906年 3月頃부터 倡義大將을 自稱하고 忠清南北道에서 反日·反賣國內閣의 旗印을 드높이고 組織的 活動을 했으며, 田愚의 慶尙北道에서의 判亂, 柳麟錫의 江原道江陵에서의 叛亂등各地方에서 계속해서 展開되었다. 1907年 「해이그」 密使事件을 口實로 高宗讓位, 韓國軍隊解散등 日帝의 韓國併合陰謀가 露骨화되자 抗日鬪爭은 民衆組織化 되고 義兵鬪爭도 樣相을 달리해서 그 活動範圍가 北韓地方에까지 波及 되어 全國의 規模의 大衆的地盤에선 抗日反侵略鬪爭으로 擴大되었으며 그리고 義兵의 主된 攻擊對象은 親日官吏, 一進會員 및 憲兵分遣所

(26) 協約強行을 現地에서 主導한 者는 伊藤博文 林權助公使등이며 韓國政府의 閣僚로서 이 協約締結에 直接關係한 賣國奴各大臣 所謂乙巳五賊은 內務大臣 李址鎔, 軍部大臣 李根澤, 法部大臣 李夏榮, 學部大臣 李完用, 農商工部大臣 權重顯등이었다.

(27) 乙巳保護條約에 대한 反抗運動을 그 鬪爭形態의 差異點을 감안해서 山邊健太郎는 A. 個人的 消極的인 反抗(1905年の 舊廷臣등의 宮城前에서의 一連의 自殺事件) B. 宮廷의 陰謀的反抗(1905年の Washington密使事件등) C. 個人的 Terorism(賣國奴, 日帝走狗에 대한 暗殺), D. 暴動에 의한 反抗(放火, 撤市等 集團的 反抗) E. 武裝暴動에 의한 反抗(洪州武裝叛亂등)등으로 區分하고 있으나 (日本의 韓國併合 pp. 298-312. 太平出版社 1975)韓民族의 鬪爭은 決코 單純한 「反抗」이 아니고 正當한 韓民族의 自主權회복을 위한 要求의 發露이었던 것이다.

(28) 朴殷植 韓國獨立運動之史 pp. 16-17. 서울, 서울新聞社 出版局 1946.

其他 在留日本人등이 있다.

抗日鬪爭과 義兵運動은 上述한 「하이그」密使事件(前議政府參贊 李相尚, 前平理院檢事 李鳴에게 全權委任狀下付)과 高宗의 退位 및 韓國軍隊의 解散을 契機로 全國的規模의 大眾抗爭으로 組織화되어 擴大되었다. 1907年6月에 和蘭 海牙에서 萬國平和會議가 開催됨에 즈음해서 國際會議에 呼訴하여 列國으로 하여금 韓國의 貞意와는 無關하게 日本이 强要한 保護權을 否認케 하려는 高宗의 密勅은 言及되어 國際的으로 暴露되었다. 이 事件이 日帝로 하여금 다시없는 侵略의 口實이 되어 統監 伊藤博文이 高宗을 退任시켜 露骨의 併合政策을 一步前進케 한 것은 우선 英美兩國이 그들의 利害關係에서 日本의 韓國侵略을 支援해 왔고 또 帝政露西亞가 日本의 韓國에 대한 宗主權을 認定하고 韓國과 協調를 拒絶했기 때문이었으며 이 러한 日帝의 陰謀는 마침내 韓民族의 反抗을 불러 일으켰다. 1907年 1月18日 讓位가 決定되던 날밤 自強會, 同友會, 基督敎青年會의 會員이 中心이 된 2,000名이 動員되어 서울鍾路네 거리에서 大示威運動이 展開되었다. 그 一隊는 賣國團體인 一進會의 機關紙 國民新聞의 本社를 襲擊하였고 다른 一隊는 新王宮 慶運宮大漢門前의 十字街에 集合하여 示威하였다. 그리고 이 事件을 口實로 韓國軍隊가 解散되자 舊韓國軍隊의 抗日戰爭은 解散式에 參加하지 않은 部隊의 抗拒로 부터 시작했다. 즉 步兵參領 朴性煥大隊長이 軍隊解散에 悲憤한 나머지 自殺하자 全大隊는 곧 武器彈藥을 탈취하여 叛亂을 이르렀고 이 戰鬪는 서울의 隣接聯隊에 波及되었을 뿐더러 原州 春川 橫城 江華島 등 각地方을 위시해서 全國的인 武裝義兵戰鬪로 擴大된 것이다.

義兵運動이 最高潮에 達한 1908年5月에 日帝政府는 이미 韓國에 주둔하고 있던 軍隊 및 憲兵으로도 不安을 느꼈는지 새로 軍隊를 增強하고 다시 憲兵補助員과 警察隊를 韓國駐在軍司令官, 憲兵司令官 및 警察局長 등의 指揮下에 大大的인 焦土作戰으로 討伐이 자행되었으며⁽²⁹⁾ 여기에 賣國團體「一進會」의 所謂 自警團도 動員시켜 協力케 하였다. 그結果 가장 戰鬪가 燥烈했던 1907年8月부터 1909年末까지 義兵만 17,000餘名이 殺害되고 36,000餘名이 부상되고 이밖에 많은 住民이 殺害되고 村落이 소실되었다. 특히 1909年末의 全羅南道를 中心으로 한 所謂「南韓暴徒大討伐」와 慶尚道, 黃海道一帶의 義兵「討伐」에서 被害는 막심하였다.

이와같이 舊官人 兩班層士林의 指導下에 農民과 解放軍人등이 中心이 되어 全國的規模로 組織化된 大規模의 武裝義兵의 抗拒는 日帝의 莫強한 武力앞에 彈壓을 받아 일단 주춤했으나 民衆의 反抗은 決코 鎮壓되지 않았으며 賣國奴朴內閣에 대한 韓民族의 攻擊은 하루하루 더욱 격화되어 갔다. 그러나 賣國奴 朴齋純內閣은 이 民衆의 正當한 反抗을 抑壓하기 위하여 統監府의 軍事力 警察力에 의존했기 때문에 이것이 디옵 朴內閣에 대한 民衆의 抗拒에

(29) 當時의 韓國주둔 軍事力 警察力은 1個師團, 1個旅團, 騎兵派遣隊(4個中隊)의 軍隊와 2,000餘名의 憲兵이 있었으나 새로 第2327聯隊와 다시 憲兵補助員 4,000餘名 警察隊 5,000餘名이 增強되었다. (資料「朝鮮暴徒討伐誌」参考)

기름을 뿌리는結果가 되었다. 특히當時韓國의知識人이言論結社教育分野에서 수행한反侵略, 反封建의大衆的近代化思想運動에관하여 다음에簡單히論하고자한다.

2. 愛國志士의 民族運動 우선 1905年5月에는民權의伸張을 표방한憲政研究會가組織되고同年11月에는大韓俱樂部가, 다음1906年4月에는張志淵·沈宜性등이發起한大韓自強會가組織되었으며이大韓自強會의活動을계승해서1907年11月에는柳瑾,張志淵등이中心이되어廣範한大衆的基盤에서進步的愛國人士를망라한政治團體로서大韓協會를結成하였다.

이大韓協會는뒤에西北學會와合同하여抗日大同團結한團體로서國內外에그組織基盤을擴充하였으며⁽³⁰⁾이들抗日愛國者들이수행한啓蒙運動으로서는「大韓歷史」「大韓地誌」「乙支文德傳」「李舜臣傳」등의書籍을出版하여民族意識과祖國愛를高唱하고또한「越南亡命史」「法國革命史」「波蘭亡國史」「美國獨立史」「伊太利獨立史」등의書籍도翻譯出版하여祖國의獨立運動을고취하였다. 이밖에消極의인大衆反抗運動으로서1907年봄大邱에國債報償禁煙期成會가organization되었다. 그主旨는韓國을獨立을위해서는우선日本債務1,300圓을返済하지않으면안되므로이를위해서會員은禁煙하여義捐金을모집하자는것이었다. 이運動은當時大衆속에큰反應을이르켜各地에는支部가結社되고마침내排日運動은全國的으로波及되었던것이다.

1900年부터1910年期間특히1906年以來로많은政治結社,學會其他의啓蒙團體와言論機關등이民間愛國志士들에의하여結成되었다. 앞에서論及한獨立協會,憲政研究會,大韓自強會,大韓協會,國債報償禁煙期成會以外에도新民會,西北學會(李甲,鄭雲復中心),畿湖興學會(李光鍾,柳瑾中心),嶠南教育會(張志淵,朴晶東中心),關東學會(南宮樟,鄭鳳時中心),湖南學會(李傑,李沂等中心),大東學會(金允植,申箕善,李道宰中心),開成學會,興士團(俞吉濬,金嘉鎮吳世昌등),女子教育會등은日本의走狗인國賊들의政權을不信攻駁하는民間運動을일으켰으며,新聞및雜誌와學報로는皇城新聞,帝國新聞,大韓每日申報,大韓民報,大韓自強會月報,西北學會月報,大韓興學報,畿湖學報,湖南學報,少年,西友,韓半島,夜雷教育月報,工業界등이있어反日民族思想을고취하는데선봉에선것이다.

3. 日帝의彈壓 日帝는그들의侵略에抵抗하는이들의愛國的民族文化啓蒙運動을봉쇄하기위하여惡辣한新聞紙法學會令出版法등의法規를만들어彈壓을자양하였다.

「韓國統監府」의設置後1906年7月에公布한「新聞紙法」은日本皇室의冒瀆,國憲의紊亂,또는國際交誼의阻害事項을嚴禁한다는口實下에反日獨立運動의彈壓을企圖하였으며1908年8月에制定한學會令은「公安秩序의妨害」를口實로民間設立의教育會및學會에대

(30) 大韓協會는會長金嘉鎮,副會長吳世昌,總務尹孝定外에評議員長權東鎮評議員李宇永,金明濬,沈宜性등이參與했으며西北學會合同後는鄭雲復,安昌浩,李東輝,柳東說등이加入했다.會員은韓國,日本,滿州,上海,露領沿海州등에도多數있었다.

한 嚴重한 許可制를 强要했고 또 1909年2月에는 出版法을 公布하고 嚴密한 檢閱許可制를 통하여 出版活動을 徹底하게 規制하였다.

특히 1910年 8月의 「併合」이 強行되던 時期를 前後해서 言論 및 結社 出版活動에 대한 徹底한 大規模의 彈壓이 加해졌으며 이로 말미암아 數10種이 넘는 新聞 雜誌가 發行禁止당하고 民族意識과 獨立을 고취하는 新聞 雜誌 教科書 書籍들이 發行, 發賣 禁止 또는 到處에서 押收燒却당하는 反面「京城日報」「毎日申報」「서울푸리스」英文 및 「朝鮮公論」「朝鮮及滿州」등의 日人經營의 總督府御用紙와 雜誌 그리고 定期刊行物만이 許可되었다. 또 1910年 9月의 「保安法」公布를 契機로 一切의 政治結社는 解散되고 言論은 彈壓되고 一席에 2,3人이 集合하는 社交모임조차 禁止되었다. ⁽³¹⁾

4. 民族教育運動 한편 이時期의 愛國文化啓蒙運動의 一環으로써 民族教育運動이 民間愛國志士와 先覺知識層人士들에 의하여 활발히 展開되었다. 그것은 民族과 國家의 危機에 處하여 國權을 回復하고 富強한 自主國家를 建設하기 위해서는 年少子弟를 권유 취학시켜 舊習을 打破하고 新文明의 知識을 啓發하여 人材를 養成하고 國脈의 培養을 圖謀함으로써 國家, 民族의 自立存續을 期하자는 그趣旨가 있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自主獨立」「文明開化」「內修外學」「배우는 것이 힘이다」등의 標語를 내걸고 日帝侵略者와 封建的儒敎教育에 反對해서 新敎育의 實施를 強調하는 民間의 民族敎育運動이 활발히 展開되었다.

그 結果 全國各地에서 正規의 私立學校를 비롯해서 많은 書堂 各種의 講習所 夜學會등이 設置되었으며 小, 中, 專門을 合하여 全國에 3000餘校가 있었는데 거의 民間愛國志士들의 精力과 財力으로 設立된 것이었다. 이로써 새로운 思潮가 普及되고 愛國熱은 一瀉千里의 氣勢로 발홍하였다. ⁽³²⁾

이와같은 충천하는 愛國的敎育熱을 「不良」「不穩」하다고 다음과 같이 비방하였다. 即 1905年 前後에 「一時 敎育熱의 勃興에 수반해서 各地에 이를 濫設하고 其設立의 動機가 穩當치 못하고 不良한 敎科書를 使用해서 不穩한 思想을 注入하여 나팔 북을 吹奏하여 兵式調練을 일삼고 聯合 運動會등을 開催해서 함부로 血氣의 青年에게 敵愾心을 고취하고 穩健實質의 美風勤儉力行의 良俗을 害치는 狀態를 가져왔다.」⁽³³⁾고 못마땅히 생각하였다.

(31) 1910年當時 新聞約 550種, 雜誌 990餘種이 輸入되었으나 이를 輸入新聞의 發賣禁止度數는 美國新聞 98件, 露西亞新聞 34件 日本新聞 97件등이며 韓國內新聞은 26件으로서 總計 255件에 達하였다.

「朝鮮法令輯覽」上卷.

小森總治「明石元二郎」上 p.491. 參考

(32) 李萬珪著 朝鮮敎育史下 乙酉文化社 4282年 p.82 韓國敎育의 現狀 pp.49—50.

當時許可를 받은 私立學校敎育도 普通學校 16個, 高等學校 2個, 實業學校 7個, 各種學校 1,402個, 宗敎學校 823個 合計 2,250個로서 ((1910年 5月現在) 認可를 받지 못한學校까지 合하면 무려 3,000~5,000個에 達했다고 한다.

主要私立學校로는 養正義塾, 普成學校, 徽文義塾, 進明女學校, 明新女子學校, 普成中學校, 中東學校, 五山學校, 五星學校, 大成學校, 徽湖學校, 輔仁學校, 隆熙學校, 啓聖學校, 信聖學校, 韓

또 1904년에 學部參與官을 파견해서 教育干涉을 始作했으나 1906年 統監府 設置以後에는 學務次官으로 依孫一을 파견하여 그의 實質上統制下에 所謂「臨時學事擴充案」에 의하여 日本語 實業教育中心의 이론바「文明的教育」이란 美名下에 또는 「敎育을 刷新하고 內容을 充實시 한다」는 口實下에 政治的 民族的 및 科學的인 內容의 敎育을 極力 排除하였다. 즉 普通學校令, 高等學校令 師範學校令 實業學校令등에 의하여 學制를 改惡하고 官公立 學校를 漸次增設해서⁽³⁴⁾ 日本人教師를 配置했으며 특히 日人教師를 教監이란 學事行政首腦에 任命하여 敎育에 깊이 干與개하여 敎科用圖書의 統制와 親日敎育 그리고 日本語敎育을 强要했다. 이와 同時に 私立學校令(1908年8月) 書堂에 關한 訓令(上同) 學會令(1908年9月)을 公布하여 私立學校와 書堂의 愛國敎育에 干涉하였다.

이와같은 一連의 法令適用과 民族敎育의 譚壓으로 私立學校는 漸次로 封鎖되고 1910年8月)의 「併合」即後에는 1900餘校以下로 半減되었다. 書堂에도 日本語敎育이 强制되었으며 學會敎育會中에 反目的이라는 理由로 解散當한 것이 적지 않았다.

勿論 이와같은 反日民族運動의 展開도 切迫한 韓民族의 悲運을 挽回할 수는 없었다.

第6節 「韓國併合」過程

日帝의 韓國「保護」化에 항거하는 출기찬 民族運動의 展開에도 不拘하고 그들의 所謂「帝國百年의 長計」로서 韓國을 「併合」하여 「帝國版圖의 一部」로 삼으려는 年來의 計劃은 着着進行되었다. 當時 日本의 支配階層은 勿論하고 韓國問題에 關係가 깊었던 政治家나 學者 그리고 一般國民까지도 「韓國併合」을 全面的으로 支援하고 正當화했으며 또 热狂的으로 歡迎하였다. 政治家들은 往年の 所謂 征韓論을 回顧하여 對韓經營의 根本的解決에 있어 만시지 탄을 鉴하였으며 學者들중에는 所謂「日韓同祖論」(久米邦武, 金澤庄三郎등)을 提唱하고 또는 韩民族의 歷史를 歪曲하여 韓國을 古代로 부터 日本에 服屬한 植民地라고 날조하는가 하면 韓國은 中國의 屬國으로 自立 獨立國으로서의 그 歷史나 獨自의 文化를 否定함으로써 「併合」을 合理化하는데 爽爽하였고 新聞과 一般國民들도 「併合」을 驅歌하고 美化하는 思想動員에 全面的으로 加勢하였다. 이러한 日本의 國民各階層 특히 支配階層의 思想의 特徵은 韩民族을 獨自의 民族으로서 認定하지 않고 韓國이란 國家를 한國家로서 認定하지 않는데

英書院, 信明女學校, 須皮亞女學校, 新興學校등이 있었고 敎育事學家로는 段泳徽, 俞吉瀬, 安昌浩, 李容翊, 張志淵, 李昇薰, 李東輝, 柳一宣等 個人有志와 慶善宮 英親王宮등 王宮까지 誠意로서 參與하였다.

(33) 「朝鮮人敎育私立各種學校狀況」 p.4.

(34) 官公立學校數는 1906年에 成均館1 法學校1 師範學校1 高等學校1 外國語學校7 普通學校 22 計33校 1907年에 普通學校 28이 増設되어 計 61校, 1908年에는 普通學校9 高等學校1이 增設되고 外國語學校 4가 減縮되어 計67, 1909年에는 普通學校 32, 實業學校4가 增設되고 外國語學校 2가 다시 減縮되어 計102校 그리고 1910年에는 普通學校10 實業學校11, 實業補習學校 4가 增設되어 計127個校에 達하였다. 여기서 특히 外國語學校數는 1個校로 減縮하고 統監府의 監督下에 있는 普通學校와 實業學校가 增設된 點이 注目된다. (京城日報社「朝鮮年鑑」1945)

있었다. ⁽³⁵⁾

또한 露·日戰爭後 日帝의 韓國「保護國」化 決定에 따라 統監府組織問題를 놓고 日本의 支配階層에서는 武官組織論과 文治組織論이 對立하였다. ⁽³⁶⁾ 日本陸軍側에서는 過渡期의 韓國支配의 方案으로 露日戰爭中 日本陸軍이 韓國內에 實施한 戰時軍政體制를 계속 維持하는 武官組織을 固執하였고 伊藤博文을 中心한 文官一派는 戰後陸軍의 발호를 警戒하여 文治組織을 主張하였다. 결국 伊藤博文이 天皇의 特旨를 얻어 統監으로 任命됨으로써 文治組織으로 落着되었다. ⁽³⁷⁾ 이리하여 初期의 統監府(1906年2月1日開廳)는 文官統監을 首班으로 방대한 官僚機構를 創設하여 治安維持를 위해서 憲兵대신 警察을 主軸으로 하여 文治路線을 指向하였으나 反日義兵鬪爭이 全國的規模로 高調되고, 王室을 포함한 全民族的 抵抗과 鬪爭에 대하여 큰 不安과 恐怖感을 느끼고 文治組織의 「保護」體制로서는 「收拾할 수 없는 事態」도豫想되었기 때문에 文治主義의 主張者인 伊藤博文自身이 積極적으로 軍隊와 憲兵을 增強하며 憲兵補助員制度를 創設함으로써 從前의 戰時下 軍政當時보다 더 森嚴한 軍隊式治安體制를 形成한것이며 이를 背景으로 「併合」陰謀를 조급히 서두르기도 했던 것이다.

마침 1908年7月에 山縣軍閥系 第2次 桂內閣이 成立하자 1909年 7月6일에 閣議에서 「韓國併合에 關한 件」이 決定되고 同日로 天皇의 裁可를 받아 日帝의 韓國「併合」이 不動의 方針으로 公式으로 確定된 것이다. ⁽³⁸⁾ 이러한 日本政府의 公式決定이 있은 後인 1909年 12月4일에 一進會의 「合併聲明」이 發表되었다. 이와같이 韓國「併合」의 要求가 韓國人側에서 提起된 것 같이 看미는 것이 日帝로서는 有利하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가진 策動을 자행하였으며 그策動의 產物의 하나가 一進會이었다. 一進會 幹部 李容九와 宋秉畯은 韓國民의 意志와는 秋毫의 關聯도 없이 그들 個人的 政治的野心에서 「韓日合併論」의 實國論을 취한 것이다.

한편 韓國內에서는 反帝民族運動으로 血戰이 展開되고 있을 때 實國奴內閣에서는 누가 日

(35) 渡部學編 朝鮮近代史 pp.138—143. 東京 劍草書房. 1973.

(36) 金正明編, 日韓外交資料集成(6)上 p. 100. 東京 嶺南堂 1864.

(37) 西四辻公堯編 魚潭少將回顧錄 1930. pp. 308~9.

(38) 日帝의 「併合」計劃이 具體화된 것은 1903年 日露戰爭頃이었다고 한다. (桂太郎의 自傳)對韓政策의 方針과 施設大綱에 관해서는 1909年 봄부터 首相 桂太郎, 山縣有朋, 伊藤博文, 小村外相등 사이에서 非公式으로 論議되었고 이것이 日本閣議決定과 天皇裁可로 公式化된 것은 1909年7月6日付의 「對韓政策確定의 件」과 「對韓施設大綱」이었다. 前者 「對韓政策確定의 件」의 要旨는 第一. 適當한 時期에 있어 韓國의 併合을 斷行할 것—韓國을 併合하여 이를 帝國版圖의 一部로 함은…帝國百年의 長計임. 第二. 併合의 時期 到來하기 까지는 併合의 方針에 基해 充分히 保護의 實權을 거두어 힘써 實力의 扶植을 圖謀할事…라고 했고 後者の 「對韓施設大綱」의 要旨는 韓國에 대한 帝國政府의 大方針이 決定된 以上 同國에 對한施設은 併合의 時期到來하기까지…第一. …必要的 軍隊를 同國에 駐屯시키고 또한 最大限의 憲兵及 警察官을 同國에 增派하여十分의 秩序維持의 目的을 達할事. 第三. 韓國鐵道를 帝國鐵道院의 管轄에 移管해서 그 監督下에 南滿州鐵道와의 事業에 密接한 連絡을 맺어 我大陸鐵道의 統一과 發展을 圖謀할事. 第四, 可及多數의 本邦人을 韓國內에 移植해서 我實力의 根底를 深化하는 同時に 韓日間의 經濟關係를 密接하게 할事. 第五. 韓國中央政府及 地方官廳에 在任하는 本邦人官吏의 權限을 擴張하고 一層 敏活하고 統一의 인施政을 行할것을 期한 事등이었다. (山邊健太郎著 日韓併合小史 pp. 219—224 岩波新書 1976)

帝에迎合하느냐하는 競合이 벌어졌다. 특히 日帝의 完全한 走狗인 一進會를 背景으로한 宋秉畯과 李完用의 對立이 激化하였다. 그러나 一進會의 너무 露骨의인 売國行態가 韓民族의 反感을 불러 이르키자 宋은 伊藤統監의 支援조차 얻지 못하고 辞職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結局 朴齋純이 새로 入閣하였고 뒤이어 伊藤博文도 統監을 辞任하여 副統監 曾禰荒助가 統監이 되었다. 마침 伊藤博文이 하르빈驛頭에서 安重根義士에 의하여 暗殺되자(1909年10月26日) 日帝는 이事件을 「併合」을 위한 絶好의 機會로 삼고 一進會로 하여금 「併合」의 上申을 하도록 劇策하였다. 그러나 이들 売國奴에 대한 韩民族의 抗爭이 燥烈化되자 드디어 李完用 内閣總理大臣은 辞職하고 朴齋純이 그에 代置되었으며 統監도 「併合」을 完成시킬 任務를 떠우고 당돌한 陸軍大將 寺內正毅로 代置 되었다(1910年5月30日). 이로써 韓國統治에 대한 武官組織論이 確定된 셈이다.

寺內統監은 武官組織을 一層强化하기 위하여 우선 警察制度와 憲兵制度의 強化를 피하고 憲兵과 警察을 統合하여 日本의 陸軍少將의 憲兵隊長 明石元二郎을 初代 警務隊長으로 任命하는 동시에 警察費는 韓國政府가豫算에서 부담토록 强要함으로써 後年에 惡名높은 憲兵政治의 基礎를 구축했으며 이로써 併合準備는豫定한 計劃대로 박차를 加한 것이다. 寺內를 統監으로 任命한直後 日本政府는 「韓國을 日本에 併合하지 않고서는 統治의 責任은 到底히 充足할 수 없다고 確認하고」 韓國의 情勢에 비추어 必要할 때 斷行하기로 하고 併合後의 韓國에 대한 施政方針을 다음과 같이 決定하였다.⁽³⁹⁾

〈總督統治의 策定=併合의 基本方策〉

1. 朝鮮에는 當分間 憲法을 施行하지 않고 大權에 의하여 이를 統治한다.
2. 總督은 天皇에 直隸하여 朝鮮에 있어서 일체의 政務를 統轄할 權限을 가진다.
3. 總督에게는 大權의 委任에 의하여 法律事項에 關한 命令을 發하는 權限을 賦與할 것. 但 本命令은 따로 法令 또는 律令등 適當한 名稱을 붙일 것.
4. 朝鮮의 政治는 될수록 簡易를 本旨로 할 것. 따라서 政治機關도 역시 이主旨에 따라 改廢할 것.
5. 總督府의 會計는 特別會計로 할 것(6~11項省略)
12. 統監府 및 韓國政府에 在職하는 日本國官吏中 不用者는 歸還또는 休職을 命할 것.
13. 朝鮮에 있어서 官吏에는 그 階級에 따라 될 수 있는 限 多數의 朝鮮人을 採用하는 方針을 取할것.

〈付 憲法의 釋義〉

韓國併合인 以上 帝國憲法은 當然히 그 新領土에 施行되는 것으로 解釋함. 그러나 事實에 있어서는 新領土에 대하여 帝國憲法의 各條章을 施行치 않음이 適當하다고 認定함으로써 憲法의 範圍에 있어서 除外法規를 制定할 것.

이것이 併合後의 새로이 設立될 武官組織體制의 總督統治의 要領인데 이를 敷衍하면 (1) 韓國을 併合하더라도 韓國에는 日本帝國憲法을 施行치 않고 日本과 差別하여 統治하며 (2)

(39) 日本統治時代の朝鮮(「外誌法制誌」第四部の二)pp. 11—13 昭和 46年3月 條約局法規課

일체 政務는 武官總督이 獨裁하며 (3) 政治와 政治機構七 될 수 있는 한 簡單하게 하며 (4) 總督府의 會計는 特別會計로 하고 그 政費는 韓國의 歲入(鐵道, 通信, 關稅包含)으로 充當 할 것을 原則으로 하되 當分間 一定한 金額을 定하여 本國政府에서 補充하며 (5) 韓人을 下級官吏로서 多數採用한다는 등이었다.

그러나 한편 日帝의 이와같은 韓國「保護化」와 「併合」劃策이 美英등 列強의 支援 또는 默認下에 자행되었다는 事實도 看過할 수 없는 것이다. 當時 日本과 美英은 太平洋方面에서 큰 利害對立은 없었고 오히려 美英은 共히 帝政露西亞의 南下에 對抗하고 나아가서 中國에 對抗할 關心이 보다 많았기 때문에 日本의 韓國侵略을 默認 支援하였다. 먼저 清日戰爭에서 美英은 共히 日本에 대한 中立을 지키고 戰後의 露, 獨, 佛등의 對日干涉에도 가담하지 않았다. 다음 露日戰爭에서도 美國은 日本에 대하여 好意的中立의 立場을 取했고 英國은 勿論 英日同盟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보다 積極的으로 日本을 支援했다.

美國大統領 루즈벨트의 仲介로 締結된 露日講和條約 第二條에는 「露西亞帝國政府는 日本國이 韓國에서 政事上 軍事上及經濟上의 卓絕한 利益을 가짐을 承認하고 日本帝國政府가 韓國에서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指導, 保護及 監理의 措置를 취함에 있어 이를 阻礙하거나 또는 이에 干涉하지 않을것을 約함」이란 項이 있으며 또 빼스마스條約에 앞서 第2次 英日同盟條約 第3條에는 「日本國은 韓國에서 政事上, 軍事上 及 經濟上의 卓絕한 利益을 가짐으로써 大不列顛國은 日本國이 該利益을 擁護 增進시키기 위하여 正當且必要하다고 認定하는 指導·監理及保護의 措置를 韓國에서 취할 權利를 承認함」이라는 項이 있다. 이로써 보건데 日本의 韓國侵略從屬化를 英美的 支援下에 清國과 露西亞에게 承認시킨 것에 不過하다 하겠다.

또한 빼스마스條約에 앞서 美·日兩國間에 合意된 所謂桂·Taft密約의 經緯에서도 美國이 日本의 韓國支配를 承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美國大統領 「루즈벨트」는 東洋에서 새로운 「巨像」으로 登場한 日本이 比賓律을 侵略할 것을 虑慮하고 警戒했으며 1905年 1月 28일에는 「自國防衛를 위하여 一擊도 發할 수 없는 韓國을 위하여 日本에 대하여 干涉할 수는 없다」고 출해한 바 있고 그 7個月後 1905年7月29일에는 表面上 比賓律에 파견된 陸軍長官 Taft가 東京의 桂首相과 秘密覺書를 交換했다. 그 主內容은 日本의 韓國支配를 承認하는 代價로 「日本은 比賓律에 대하여 如何한 侵略的意思도 가지고 있지 않고 있음을 積極的으로 開陳케 하였고」 또 桂首相은 日本의 外交政策의 基本的原則은 極東에 있어서一般的平和를維持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서 「日·英·美 三國政府間의 善意의 理解」가 形成되어야 한다고 外交去來上의 美辭를 裝飾하였다. 나아가서 桂首相은 「韓國問題에 關하여 韓國은 日本이 露國과 戰爭한 直接的原因이 되었으므로 戰爭의 論理的結果로서 半島問題를 完全히 解決하는것이 日本에게 絶對로 必要한 事項」이라고 斷言하였다.⁽⁴⁰⁾ 이 覺書는 루즈벨트大統領에

(40) 이 密約은 日本桂總理大臣과 美合衆國 Taft陸軍大臣사이에서 1905年7月27일午前 長時間의 機密會

의하여 計劃되고 또 明確히 承認된 것으로 이로써 日帝는 韓國을 「保護國化」하고 「併合」하는데 美國의贊意를 얻었다고 간주하고 韓國侵略을 急速히 推進한 것이다.

이와같이 韓國의「併合」은 日本朝野의 帝國主義의 侵略政策과 傳來의 侵略意識 또는 韓國蔑視 그리고 韓國政府의 無能과 一部賣國奴의 叛逆行爲 나아가서는 美英을 위시한 帝國主義 列強의 協同 및 承認下에 强行된 것이다.

마침 嚴重한 警備下에서 「併合」準備가 强行되는 가운데 1910年8月22日 統監 寺內正毅와 總理大臣 李完用과의 사이에 韓日「併合條約」이 「締結」되었다. 그 形式은 韓國의 皇帝가 日本皇帝에게 「併合」을 要請하고 後者가 이를 受諾하는 形式을 假裝했으며 이로써 日帝의 韓國侵略은 完成된 것이다.

談에서 合意본 覺書로서 그內容이 美國에서는 1924年에 公表되었으나 日本에서는 秘密로 한채 第2次大戰後에 비로소 公表되었다. (山邊健太郎著 日韓併合小史 pp.216—219 岩波新書 東京 1976年, 日本의 韓國併合 pp.320—321 太平洋出版社 東京 1975年)